

투자 위험 등급 :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알파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6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파에셋국공채법인MMF 1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에셋국공채법인 MMF 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파에셋국공채법인MMF 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파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alph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8년 10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10월 13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10조좌 (최초설정일기준 1좌당 1원)**
(모집 또는 매출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간)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Tel. 02-769-7600, www.alphasset.com, 각 판매회사 영업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10.12)

알파에셋국공채법인MMF1호 (펀드코드 : CF861)

투자 위험 등급 :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알파에셋국공채법인 MMF1 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6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p>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p>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개방형(환매 가능), 추가형(추가 자금납입 가능)		
집합투자업자	알파에셋자산운용(주) (02-769-7600)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최초설정일기준 1 좌당 1 원)
효력발생일	2018년 10월 13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lphass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해당사항 없음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판매/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보수(연, %)	판매	0.0400	
	운용 등	운용(0.0400) 신탁(0.0120) 일반사무관리(0.0080)	
	기타	-	
	총보수·비용	0.1000	

※ **주석사항**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판매 및 운용 등 보수 지급시기는 매 3개월 후급, 기타 비용 지급시기는 사유 발생시입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 17시 이전 환매한 경우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하여 제 2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환매한 경우 :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하여 제 3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기준가	<p>1,000 좌당 1,000 원</p> <p>-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alph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p>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이자수익 획득 및 유동성 확보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의 우량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권) 편입
- 단기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절한 비율의 유동성자산(전자단기사채, CD, 예금 및 콜 등) 운용으로 환금성 제고

※ **비교지수 : KIS Call 지수 * 100%**

주 1) 비교지수 선정사유 : KIS Call 지수는 KIS Pricing (KIS 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금융시장을 반영한 유동성지수로서 각 유동성자산(Call, CD, CP) 수익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이 투자신탁 특성상 단기금융시장과의 성과비교를 위하여 상기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주 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에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09.17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 운용 전문 인력	김정국	1983	채권 운용 팀장	8개	8,401억	서강대학교 경영학 투자자산운용사 2009.11 ~ 2013.04 : 메리츠자산운용(컴플라이언스/LT 운용팀) 2013.05 ~ 2013.09 : 유진투자증권 투자금융팀 2014.04 ~ 현재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 개 / 170 억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장여선	1990	운용역	-	-	고려대학교 경영학 투자자산운용사 2015.07 ~ 2016.06 : 흥국증권 채권금융팀 2016.08 ~ 2017.04 : 미래에셋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본부 2017.05 ~ 현재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이자율변동 위험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와 정식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등급 분류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채권 및 어음등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채권 및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인지하여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알파에셋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하기와 같은 위험관리 방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편입자산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 펀드의 듀레이션을 제한 범위내로 조절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에 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의 1. 재무정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lph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lphasset.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lph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알파에셋국공채법인 MMF1 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F86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	법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1 좌 단위로 모집),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1 좌당=1 원)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개시(2018 년 10 월 15 일 예정)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법인투자자 대상으로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lph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알파에셋국공채법인 MMF1 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F86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8 년 10 월 15 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중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알파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5, 주택건설회관 3 층 (대표전화 : 02-769-76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 (2018.09.17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책임 운용 인력	김정국	1983	채권 운용 팀장	8 개	8,401 억	서강대학교 경영학 투자자산운용사 2009.11 ~ 2013.04 : 메리츠자산운용(컴플라이언스/LT 운용팀) 2013.05 ~ 2013.09 : 유진투자증권 투자금융팀 2014.04 ~ 현재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 개 / 170 억
부책임 운용 인력	장여선	1990	운용역	-	-	고려대학교 경영학 투자자산운용사 2015.07 ~ 2016.06 : 흥국증권 채권금융팀 2016.08 ~ 2017.04 : 미래에셋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본부 2017.05 ~ 현재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주 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및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투자대상자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남은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 제 8 조제 9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의 2. 다음 각 목의 증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 등

8. 환매조건부매도

9.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4 조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④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 3 항제 1 호부터 제 3 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 3 항제 4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 3 항제 5 호부터 제 7 호에 해당하는 것

신용평가등급 제한

①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 개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 2 항 제 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용 및 투자 제한 내용	
①	<p>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②의 2	<p>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p> <p>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p> <p>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p> <p>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③	<p>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p> <p>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기 30 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⑤	이 단기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⑥	이 단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 일을 초과하는 행위

⑦	이 단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⑧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p>-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3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8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이자수익 획득 및 유동성 확보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의 우량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권) 편입
- 단기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절한 비율의 유동성자산(전자단기사채, CD, 예금 및 콜 등) 운용으로 환금성 제고

(2) 위험관리

하기와 같은 위험관리 방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편입자산의 신용평가등급 제한
- 펀드의 듀레이션을 제한 범위내로 조절

※ 비교지수 : KIS Call 지수 * 100%

주 1) 비교지수 선정사유 : KIS Call 지수는 KIS Pricing (KIS 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금융시장을 반영한 유동성지수로써 각 유동성자산(Call, CD, CP) 수익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이 투자신탁 특성상 단기금융시장과의 성과비교를 위하여 상기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주 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에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에 의해 수익이 결정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아닌 장부가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등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이자율변동 위험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중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나. 환매'의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 위험	투자신탁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하여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6) 등급 매우 낮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채권 및 어음등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채권 및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인지하여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으로 제한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는 75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가평가도 배제되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장부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원금이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0.5%를 초과하게되면 시가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변경 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알파에셋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 등급	분류기준	상세 설명
1 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험등급 분류는 알파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알파에셋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알파에셋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자금 납입 (17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적용일)	
자금 납입 (17시 경과 후)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라)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판매회사가 '외환거래법' 제 13 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국가재정법' 제 81 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 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3 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D	D+1	D+2
환매청구일 (17 시 이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청구일 (17 시 경과 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지급합니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다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5 시이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 256 조)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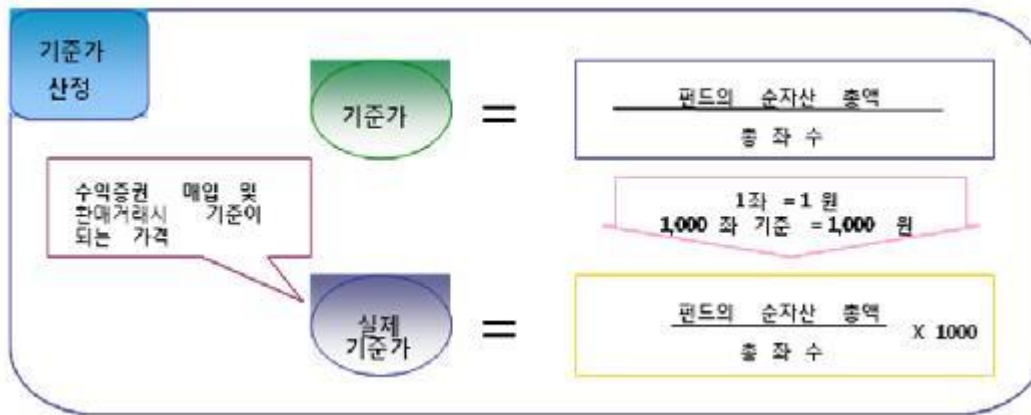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alph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 1)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제 26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

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알파에셋국공채 법인 MMF1 호	법인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알파에셋 국공채법인 MMF1 호	0.0400	0.0400	0.0120	0.0080	-	0.1000	0.1000	-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거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 투자신탁은 신설된 경우로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추정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알파에셋국공채법인 MMF1 호	10	32	57	128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

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는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일반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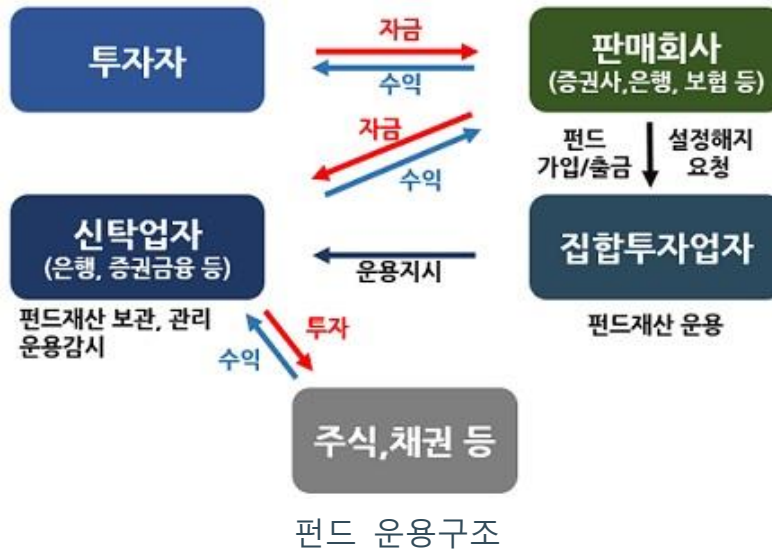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알파에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5, 주택건설회관 3층 (연락처 : 02-769-7600, www.alphasasset.com)
회사 연혁	2002. 07. 24 알파자산운용(주) 법인설립 2002. 08. 2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4. 03. 30 알파자산운용(주)에서 알파에셋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04. 03. 31 자본금 100 억으로 증자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최곤 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8.3.31	'17.3.31	항 목	'18.3.31	'17.3.31
현금및예치금	133.8	132.1	영업수익	38.8	64.8
유가증권	31.4	31.2	영업비용	35.9	34.5
대출채권	-	-	영업이익	2.9	30.3
유형자산	2.6	1.6	영업외수익	0.7	1.5
무형자산	-	-	영업외비용	0.1	0.0
기타자산	8.1	16.2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3.5	31.8
자 산 총 계	175.8	181.0	법인세비용	0.6	6.8
기타부채	2.2	9.5	당기순이익	2.9	25.0
부 채 총 계	2.2	9.5			
자본금	100.0	100.0			
이익잉여금	71.8	68.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	2.7			
자본조정	-	-			
자 본 총 계	173.6	171.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75.8	181.0			

라. 운용자산 규모 (2018.09.1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총 계
	주식	혼합형	채권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47	498	3,593	-	613	4,709	-	1,148	187	-	10,79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연락처 : 02- 3770-88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55.10 설립 (http://www.ksfc.co.kr)

(2) 주요업무

▶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선관주의 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운용행위 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 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 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4 층 ☎ 02) 2168-05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06.15 회사 설립 (www.aitas.co.kr)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 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피앤아이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번지 ☎ 02-399-33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29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 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36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① 수익자총회의 소집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위의 ② 의 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 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5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합병은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 125 조 각 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 상기 제 3 호 및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 2항 제 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기타 법시행령 제 92조제 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lphasset.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 최초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 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p>채권의 경우 장외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체결 및 호가에 대한 우월성이 생기며, 이에 따라 당사는 펀드이익 기여를 위해 우월성을 지닌 증권사를 선정. 분기평가를 실시하여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를 통해 우월성을 지닌 증권사를 선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자산, 투자비율, 자본, 당기 순이익, NCR 을 점수화하여 선정시 50% 반영 - 정성평가 : 하기 항목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시 50% 반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체결능력 : 당사 주문에 대한 체결의 신속성 및 정확성 2. 정보 제공 : 시장 정보(뉴스,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제공능력 3. 리서치 및 세미나 : 증권사 자체 리서치 능력, 세미나 제공 4. 결제업무 : 매매 등에 대한 결제 및 업무 처리 신속성 및 정확성 5. 거래 보안유지 및 중개 수수료

* 상기 선정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헷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통화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